

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,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위원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이 조례안은 품질검사 의뢰를 받은 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현행 조례를 의뢰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그 비용은 반환을 요청한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, 반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현행 규정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.

-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 
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잘 살피주시고, 시민의 삶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